

## 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요건 및 기준·절차·취소,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시행령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환경부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1) 전문, 별첨

2) 행정예고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 고시 제2025-21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47호

##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정요건 및 기준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
2.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

②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**제3조(지정절차)** ①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정의 취소)**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

2.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, 탄소중립 시·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·군·구계획과 추진 사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

3.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

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1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)**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
2. 탄소중립도시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
3.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
4. 그 밖에 위원장,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민간위원: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2. 정부위원: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계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

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을 한 경우

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6조(사후관리)**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,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**제7조(세부사항)**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,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재검토기한)**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

탄소중립도시 지정 세부기준

지정기준	세부기준	평가내용
1.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	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목표(온실가스 감축 등)의 적정성</li> <li>평가 및 환류계획 등 성과관리방안</li> </ul>
	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</li> <li>재원조달방안(민간투자 활성화 포함)의 구체성</li> </ul>
2.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, 탄소중립 시·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·군·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	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·지역의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</li> <li>탄소중립 혁신기술 적용 등 국가 기술 발전 기여도</li> </ul>
	참여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사회 참여 유도방안</li> </ul>
3.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,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	현실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간 내 목표 달성 등 실현가능성</li> </ul>
	효과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투자 대비 효율성</li> </ul>
	지속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,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계획 등</li> </ul>

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[별지 제1호 서식]

■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서식]

## 탄소중립도시 지정요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신청 기관	지방자치단체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	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	전화번호
	주소	
추진 계획 요약		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령 제28조제3항 각 호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서
-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